



U

#### Integrated process systems

33 Jije-Dong, Pyungtaek Kyungki-Do, Korea Tel: 0333-659-2120

Fax: 0333-655-7115

# <u>경 영 자 확 인 서(반기)</u>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

2000 년 8월 25일

안 건 회 계 법 인 귀중

귀 법인이 당사와 당사의 종속회사의 2000 년 6 월 30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시하

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바 입니다.

#### 1. 재무제표 작성 책임

- 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를 반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작성할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 나. 당사에서 적용한 반기회계처리기준 및 중요 회계방침은 반기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주석 에서 설명하는 사항 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다. 귀 법인에 제시한 당사의 상기 반기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분류, 금액계산, 주석 등은 반기회사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요자산의 처분, 차입금의 조기상환, 중요사업장의 이전, 중요계약의 해약 등 반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영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2. <u>자료</u> 제시

당사는 귀 법인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음과 같은 반기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의 모든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이용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제시하였습니다.

가.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 다.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
- 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및 종속회사상호간 내부거래자료
- 마. 반기조서
- 바. 금일까지의 적법한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 라. 기타 반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제반자료

#### 3. <u>부외</u> 부채

- 가. 반기대차대조표일 현재 확정된 부채로서 반기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부채는 없습니다.
- 나. 반기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계좌 및 거래내용 중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 다. 법령 및 기타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예상손실 또는 보상을 위한 충당금은 충분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 라. 법인세등 세무신고에 대한 국세청 또는 소관세무서의 갱정결정 통보 또는 신고된 법인세등의 미납부액 또는 미지급액의 과소계상액은 없습니다.

####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 반기회사 (지분법 적용회사 포함)와 반기회사의 특수관계자(관계회사, 관련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등)와의 거래는 모두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정상영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거래대상자;

거래의 종류와 연간 거래금액 ;

담보내용 및 회수가능성;

거래의 발생시기 및 만기;

거래조건(이율, 요율, 결재방법);

부당한 거래인 경우 그 이유;

#### 5.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중요사항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된 사항으로서 반기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반기재무제표에 반영되었으며 기타 반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재무제표주석에 표시된 것 어디의에는) 없습니다.

#### 6. 위법 및 부정사 건

당회계연도중 (변화기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된 것 이외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 가. 임원 또는 내부통제구조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개입된 부정사 건.
- 나. 그 밖의 직원이 개입된 부정사건으로 반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건.

# 7. 재무보고 요구사항이나 중요 계약조건의 불이행

당회계연도중 다음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이의 귀결이 당사에 불리하게 결정될 경우 반기재무 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건은 (반기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 가. 법령 및 재무보고에 관한 외부감독기관의 요구사항
- 나. 거래처 또는 차입처와의 중요 계약조건

## 8. 사용이 제한 된 자산의 내용

반기재무제 조상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반기회사가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으며, 자신 중 근저당, 질권, 기타 담보 또는 사용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개별회사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 9. 약정사항 및 우발채무 등

당회계연도 말 현재 (개별회사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약정 사항 및 우발채무는 없습니다.

가. 당사에 불리한 매출이나 매입약정사항



- 나.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
- 다. 환매조건부로 매출 또는 매입한 유가증권
- 라. 선물환 거래 등에 관한 약정사항
- 마. 당사가 타 회사 또는 개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것
- 바. 어음의 배서 또는 할인을 한 것 중 만기가 되지 아니한 것
- 사. 당사가 피고로 되어 소송이 계류중인 것
- 아.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미결된 것

#### 10. <u>반기회사간의</u> 거래

당회계연도중 또는 당회계연도말 현재 반기회사 (지분법 적용회사 포함)간의 내부거래 및 내부거래로 인한 자산과 부채, 또는 반기회사 상호간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사항은 (반기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회 사	명	주식3	회사	아이피	에스 6 1
대표 ㅇ	1사	٥]	8	한	TE VO
담당 이	l 사 _	정	명	조	
담당 부	- 장 -	고	정	환	